근 로 계 약 서(안)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_____(계약상대자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사 업 장: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
2. 계약기간: 2015. 1. 1. ~ 2015. 3. 31.
3. 근무내용
   - ○ 외국인근로자 상담
   - ○ 외국인근로자센터 교육 프로그램(한국어, 컴퓨터 교실 등) 관리
   - ○ 외국인근로자센터 자원봉사자 관리
   - ○ 그 밖에 센터 운영 프로그램 관리 및 센터 관리 등
4. 임 금
   - ○ 임금지급일: 익월 10일
   - ○ 4대사회보험가입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   - ○ 임금지급 방법
     - •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
     - • 근무카드 수합 후 일괄지급(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)
   - ○ 급여산출 방식: 일당 계산 정산 후 월 지급
   - ○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
   - ○ 근무카드 수합 후 일괄지급(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)

     ※ 지각, 조퇴자는 시간단위로 계산
   - ○ **보수: 경력직 일급**(중급경력직 78,880원, 초급경력직 68,500원)
     - • 수당
       - 초과근무수당: 20시간 / 월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         (시간급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)
       - 주차수당: 1주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(미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지급)
       - 연차수당: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

         ※ 연차 유급휴가 사용 원칙
       - 출장여비단가(회): 5회 / 20,000원
       - 급량비단가(1식): 20식 / 7,000원
     - • 공통사항: 월 보수에 4대사회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및 원천징수금 포함

○ 공적사유로 근무에 불참하는 경우 지급기준

- 예비군, 민방위교육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전 신고 시, 교육기간(시간)에 대해 일당에 준한 임금지급
- 다만,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 외로 추가교육 기간(시간)의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시간만 일당에 준한 임금지급
-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
- 본인사정으로 지각, 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만 임금지급
- 병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만 임금지급

※ 증빙자료(진단서 및 소견서)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

5. 근로시간(근무명령에 의해 근무)

○ 근무시간: 주 40시간(화~일, 8시간/1일), 월요일 휴무

※ 토요일 근무 시: 주중 대체 휴무 1일

6. 계약의 해지

○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

(제정 2012·11·8 훈령 제126호)-「제3장 채용 및 운용」의 「제9조(계약의 해지 등)」

○ 센터의 운영 중단 시, 타 기관 등과의 통합 및 이관 시, 기타 센터 운영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시는 계약 해지

○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

-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계약 진행이 없을 시, 자동으로 계약 해지

○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

○ 직권에 의한 계약 해지

-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(계약의 해지 등)에 해당하는 경우
-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시 경고를 받으며 누적 경고 3회가 되면 계약 해지
  - 근무장소 무단이탈 또는 잦은 자리 비움으로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
  - 복장이 불량하고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
  - 근무시간에 게임·주식·채팅 등의 행위로 근무자세가 불량한 경우
  - 근태(출·퇴근 시간)가 불량하고 근무일정표의 근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 -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
-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시 경고 없이 계약 해지
  - 개인정보보호법의 무단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등 위법 행위 시, 민·형사상 처벌

7. 기　　타

○ 계약상대자는 성동구청이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○ 성동구청과 계약상대자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동구청의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.

○ 약정 이외에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청구를 행하지 아니한다.

○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아래」 법률과 규정을 적용한다.

「근로기준법」 및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

○ 계약상대자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무효로 한다.

※ 결격사유: 안전행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(채용결격사유) 준용

○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성동구청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　　12월　　일

성동구청장　　정원오　(인)

○ 주소 :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(☎ 02-2286-6499)

근 로 자　　(인)

○ 주민등록번호 :　　-

○ 주소 :　　(☎　　)